

제13조 과세표준



제13조의 요약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 \ominus 손금)에서 ① 10년내 발생된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금액은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함.
- 10년 초과된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10년내 결손금(2008년분까지는 5년내)도 발생연도 순으로 순차로 공제함.
- 동업기업의 배당한도 초과결손금은 이월배분하되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추가배분 결손금 중 작은 금액은 초과결손금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으로 봄.
- 채무출자전환초과차액의 향후충당결손금,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의 익금에 대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중소기업의 당연도결손 중 전년도 이익과 상계공제된 금액은 향후 공제되지 않음.
- 그러나 자산재평가적립금과 상계액, 다른 이익잉여금과 상계된 경우라도 세무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은 살아있음.

●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Ⅰ. 과세표준

1. 본 조의 개요

① 과세표준 계산방법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에서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200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5년까지만 인정).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합병의 경우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합병형태에 상관없이 공제하도록 본 법 제4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향후 10년까지 이월공제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2. 과세표준의 의의와 측정방법

과세표준이란 제반 조세법상의 부과되는 각종 세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과세 대상물건의 가액 및 기준수량을 지칭하는데 세법상의 목적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가치척도 및 측정방법과 산출된 가액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발생하는 제반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각각 실제거래에 따른 화폐금액을 가치척도로 하고 총거래금액의 잔액개념으로 과세표준을 측정한다.

반면에 부가가치세 등 거래에 대한 간접세는 각 개별거래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한다.

또한 지방세 등 용역사용에 대한 요금적 조세는 실제의 표면가액이나 특정

한 방법에 의한 계산가액으로 하기도 한다.

3.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및 계산요소

1) 일반적인 계산방법

① 과세표준 계산산식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산식과 같이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잔액이 된다. 각 계산요소는 별도로 해설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액,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차감된 금액은 제외함)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② 과세표준의 소득범위공제

본 조의 표현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공제한다. 소득이 있는 경우, 즉 양(+)인 경우에만 공제되며 결손이 있거나 소득이 부족하면 더이상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액도 소득이 있는 범위내에서 계산하며 공제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또한 공제안된 결손금은 다음 기 이후에 공제되지만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무조건 당기발생 사업연도에만 귀속되므로, 당기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이 없다면 비과세소득을 차기에 인식하거나 소득공제액의 발생사유를 당기에는 가능하면 회피하도록 하여야 이월결손금은 조기에 공제하고 나머지 공제액도 소멸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2) 기업외계상의 당기순이익 과세방법

① 당기순이익에 의한 과세표준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단서는 조합법인 등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면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9%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특별혜택이나 제재규정의 적용여지가 없는 법인들인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산림조합·연연초생산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다. 그러나 당해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II. 결손금의 공제 (법 제13조제1호)

1. 결손금의 정의와 유형

1) 결손금의 정의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익금총액이 손금총액보다 많지만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기타의 세법상의 이유로 반대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차액이 결손금이 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신고·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는 과세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기간을 구분한 개념이고 실제 법인은 영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간을 구분한 시기에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는 과세하고 손실이 있는 경우는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존속하지 못하는 법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세수확보와 법인발전 및 세원유지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사업연도간에 통산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적을지 몰라도, 법인이 향후 발전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게 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① 이월결손금의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

통상 기업의 손익계산서에는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이 계상되는데 경영의 사결정 등에 의거 재무제표의 외관을 좋게하기 위해 다른 재원에 의해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의 표시금액과는 달리 세무조정에 의거 계산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면 인정된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으로 결손보전하더라도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잔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본 법 제18조제8호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의 중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세무조정상 공제안되었던 금액)의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보전액만큼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즉, 이들을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다면 세무조정계산서상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이를 차감한 잔액만이 공제된다.

2) 세법상 각종 목적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유형

① 이월결손금의 유형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조세법의 목적에 따라 여러 상황에서 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금절약에 활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비교 요약한다.

관련법령	관련조항	적용방법	공제 및 처분방법	공제가능 범위
법인세법	본 조(제13조)	10년전 소득에서 공제	소득범위내 공제	10년 초과분은 소멸, 10년내 공제
	제18조제8호	익금에 불산입하며, 차감액만큼 세무상 이월결손금 감소됨	무상수증이익과 채무면제 이익보전	세법상 누적된 이월결손금(공제가능 여부에 관계 없고 10년 초과분도 가능)
	제79조제4항	청산소득의 과표계산시 공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여 청산소득 산출	세법상 누적된 이월결손금(공제가능 여부에 관계 없음)
	제91조제1항 제1호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과세표준에서 공제	세법상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과 순서

1)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이월결손금 공제가능범위

세무상 결손금이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제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자진신고가 아니고 관할세무서 등의 실지조사 및 결정과 경정의 경우에도 계산된 소득에 대해 과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즉, 자진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정에 적법히 포함되지 않은 추가결손금은 자격이 없어 공제될 수 없다.

② 이월결손금이 공제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과거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추계결정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서 추계방법에 의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조사·결정에 의한다면 이월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것은 공제한다.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6 개정)

논리적으로 보아 추계에 의한 금액이나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이 세법상 동등한 지위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모두 당해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여야 타당하다. 그러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추계과세되는 법인까지 이월결손금공제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타당성은 있다.

③ **당법인 및 피합법법인의 승계결손금**

당법인의 결손금 중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내의 결손금만 공제된다. 10년이 초과된 부분은 더이상 공제되지 않고 소멸된다. 그러나 10년 초과된 결손금이라도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과 상쇄하면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있다.

따라서 주주 등이 자산을 증여할 때 10년 초과된 결손금은 향후 공제될 기회가 상실된 금액이므로 증여익과 상쇄하고, 10년 이내 결손금으로서 향후 소득에서 공제될 결손금은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주주 등이 자산증여결정에서 시점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당법인 자체의 결손금 뿐아니라 법인합병 및 분할시 소멸법인(피합법법인 및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도 해당되며, 단 승계사업부문의 소득이익에서만 대응공제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 ③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를 포함한다. (2010. 6. 8 개정)

④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과 관련 결손금만 공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수익사업소득관련 결손금만 공제되며, 수익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된다.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08. 3. 31 개정)

2) 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기간

(1) 일반적인 경우의 공제가능기간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부터 따져서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이다. 이 중 결손금 발생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안된 금액이다.

② 이월결손금의 강제공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으면서 공제할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잔액이 있는 경우는 계상된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발생순서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10년(2008년분까지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임의로 선택 공제할 수는 없다.

③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이월결손금 발생연도가 각각 다른 경우의 누적된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이월결손금의 공제혜택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이론상 타당하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의 발생순서별 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이익보호차원에서 중요하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공제가능기간의 특별연장

사업에 따라 이익이 발생될 때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는 특별법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기간 확장의 필요성

이월결손금은 향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공제되어 법인세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세무신고서상의 계산상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향후의 법인세 비용을 줄여 지출금액을 감액시키므로 미국 등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이연법인세(Deferred Tax) 개념하에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도 영연방계통 국가는 무제한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15년,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약 10년 등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하여 법인차원의 법인세 납부액을 주주 개인차원의 소득세 납부의 일부 선납으로 보아 공제하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나라는 법인의 주주지분이 50% 이상 변동되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향후의 이월공제뿐 아니라 당기 이전의 사업연도까지 소급 공제하여 기납부된 법인세도 일부 환급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의 환급(본 법 제72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다만, 결손금공제가능기간 5년은 공제기간이 너무 짧아 장기사업설비투자자 필요한 경우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10년으로 공제기간을 연장했다.

(4)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고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배분하되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만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배분한다. 이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신설)

3) 과세소득 계산상 공제안된 이월결손금

① 이월결손금 공제의 손금산입과의 차이점

이월결손금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인데 당기의 손금과는 달리 과거의 누적순잔액으로서 소득과 차감계산한 과정을 완전히 거친 것이므로 당기 손금항목의 손금산입과 약간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손금산입항목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된다.

② 기업회계상 결손보전처리된 이월결손금

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되려면 과거에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산회계처리상 다른 잉여금·준비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도 있는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기업회계상 다른 계정금액과 상계처리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면 이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즉, 기업회계상의 처리는 대차대조표상 자본지부항목의 계정과목변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③ 채무출자전환 초과차익의 익금불산입총당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및 상계된 이월결손금

다음의 시행령 제2항은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면제익)으로서 이후의 결손과 충당된 결손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의 면제소멸 부채감소액(채무면제이익)으로 상계충당된 이월결손금과 중소기업의 결손금으로 전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액환급에 활용공제된 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상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된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이중중복공제는 안된다는 뜻이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당된 결손금 (2006. 2. 9 신설)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총당된 이월결손금 (2011. 3. 31 개정)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2006. 2. 9 신설)

④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차감항목 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전 10년내 사업연도발생분)에 감액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상 이월결손금 감액사항 : 법인세계산시 공제된 금액, 공제안된 채 10년이 지나간금액,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에 대응공제된 금액, 자산수증익의 익금산입에 대응공제된금액, 중소기업의 결손금의 전년이익 소급공제로 활용된 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영향없는 사항 : 추계결정경정으로 공제반영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⑤ 자산수증이익과 상계한 이월결손금의 회계처리

채무면제익과 자산무상수증이익을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하면 상계총당된 이월결손금은 없어진 것으로 한다. 이는 채무면제익·자산수증익이 익금에 산입될 금액을 대응시켜 법인세부담을 없애기 때문이다. 즉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중의 혜택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3.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활용방법의 유형

앞에서 해설한 바와 같이 이월결손금은 향후의 법인세액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법인의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법적 절약을 위해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된다. 즉, 비영리 내국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만 공제되는데 관련 시행규칙은 앞에 열거한 제4조제1항이다.

2) 법인합병 및 분할의 경우 이월결손금

(1)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후의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흡수합병시 합병법인은 존속되지만 피합병법인은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승계사업에서의 발생 이익만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다. 즉, 소멸법인결손금도 승계되지만 승계사업소득에서만 대응된다.

(3)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그러나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적격분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면제 또는 감면사업이 있는 법인

면제사업의 경우 소득이 있을 때만 면제한다는 뜻인데 면제사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과세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전체를 통산한다는 뜻인데 면제와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이월결손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월결손금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되었다면 면제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하지만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 법 제59조 내용이다.

4) 결손금이 누적된 휴면법인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유형이나 소득원천의 종류뿐 아니라 당해 법인의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관계없이 10년간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므로 적법하게 계산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은 해당손실에 대해 유효법인세율을 곱한 만큼의 기업가치는 있다.

예를 들어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이 되어 순자산가치는 없고 세무상 적법한 이월결손금이 1억원 계상되어 있다면 아무 영업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는 유효법인세율 20% 정도를 감안한 2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실인수후 향후 10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내야할 법인세를 안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1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대도시내 법인등기와 관련된 등록세가 3배 이상 초과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및 기타 등록과 관련된 업무나 관련행위를 위하여서는 많은 사업가의 입장에서 결손누적된 휴면법인을 찾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된다.

5) 결손금 공제 적용기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2008년까지의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의해 5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 개정후 최초로 발생한 결손금 즉 2009년분부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III. 비과세소득의 공제 (법 제13조제2호)

1. 비과세소득의 의의와 유형

① 비과세소득의 의의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조세정책 및 여타의 사회경제적 목적상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다. 이는 본 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국·공채 등의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급리가 안정되었으므로 조세중립적인 차원에서 많이 축소되었다.

② 비과세소득의 유형

본 법 제51조에 남아 있는 비과세소득 유형으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다. 또한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어 상환만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이자가 수취되는 국채·공채의 이자소득 등이 있다. 대부분 만기가 지나거나 경과되어 이젠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2. 비과세소득의 이월공제불가능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앞의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한 잔액이 양(+)의 수로 나타나면 그 범위내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잔액이 비과세소득에 비해 부족하여 공제되지 않은 잔액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① 당기 공제안된 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은 소멸

매년 발생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항목은 매년 단위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당연도 과세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월결손금이 먼저 강제공제되어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없다면 소멸된다. 즉, 다음기에 공제될 수는 없다.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5조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2005. 2. 28 개정)

IV. 소득공제액 (법 제13조제3호)

① 소득공제의 의의와 유형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이지만 특정금액, 일정소득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나 점차 축소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의 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86조의2)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근로소득공제(제126조의2)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문이나 법에서 해설한다.

② 소득공제액의 공제방법

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년내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난 잔액이 양(+)의 수로 나타나면 그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공제할 잔액이 없거나 소득공제대상액에 비해 부족하여 당기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고 당기에 없어진다.